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2020년 10월 30일

I.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투자자 구분 등

1.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 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와의 계약

1.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5)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2.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1.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 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 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3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IV-2. 투자권유

1.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2.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 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 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IV-3. 설명의무

1.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 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2. 외화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설명 의무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설명 의무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설명 의무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 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 설명의무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 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 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 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3.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 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 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 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 자.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 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5.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6.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6.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 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투자자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위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1

대분류	질문 예시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 1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여유자금 보유여부 ☐ 3개월분 미만 ☐ 3개월분~6개월분 ☐ 6개월분~9개월분 ☐ 9개월분~12개월분 ☐ 12개월분 초과
	월소득 현황 ☐ 200만원 이하 ☐ 35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700만원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 아주 좋아질 것임 ☐ 좋아질 것임 ☐ 지금과 비슷할 것임 ☐ 나빠질 것임 ☐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총 자산규모(순자산) ☐ 1억 이하 ☐ 3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 초과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이하 ☐ 20%이하 ☐ 30%이하 ☐ 50%이하 ☐ 50%초과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 주식 ☐ ELW ☐ 신용거래 ☐ 외화증권 ☐ 선물옵션 ☐ 채권 ☐ 주식형펀드 ☐ 채권/혼합형펀드 ☐ 해외펀드 ☐ 투자자문·일임 ☐ 신탁 ☐ 기타 []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 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전여 없음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5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투자수익 위험에 대한 태도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투자수익 위험에 대한 태도 ☐ ±10% 범위 ☐ ±15% 범위 ☐ ±20% 범위 ☐ ±25% 범위 ☐ ±30% 범위 초과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장되어야 함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손실감내 수준 ☐ 원금기준 $\pm 10\%$ 범위 ☐ 원금기준 $\pm 15\%$ 범위 ☐ 원금기준 $\pm 20\%$ 범위 ☐ 원금기준 $\pm 30\%$ 범위
금융투자상품 운용계획	☐ 축소 예정 ☐ 현행수준 유지 예정 ☐ 확대 예정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가족관계	☐ 부양가족 있음 ☐ 부양가족 없음
과세형태	☐ 종합과세대상 ☐ 일반과세대상
연령	☐ 20세 이하 ☐ 20세~30세 ☐ 30세~50세 ☐ 50세~65세 ☐ 65세 이상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 No ☐ 확인거부 ☐ - 65세 이상 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취약 금융소비자 해당시 자필기재 및 서명)

1.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음) 2.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 받았음)	
.일 자 : .고객의 성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서명/인 서명/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자정보 확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 (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의 경우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이자추구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법인투자자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위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1

대분류	질문 예시
재산상황	월매출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 1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여유자금 보유여부 ☐ 3개월분 미만 ☐ 3개월분~6개월분 ☐ 6개월분~9개월분 ☐ 9개월분~12개월분 ☐ 12개월분 초과
	월매출 현황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향후 자신의 매출원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 아주 좋아질 것임 ☐ 좋아질 것임 ☐ 지금과 비슷할 것임 ☐ 나빠질 것임 ☐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총 자산규모(순자산) ☐ 10억 이하 ☐ 50억 이하 ☐ 100억 이하 ☐ 300억 이하 ☐ 300억 초과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이하 ☐ 20%이하 ☐ 30%이하 ☐ 50%이하 ☐ 50%초과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 ☐ 주식 ☐ ELW ☐ 신용거래 ☐ 외환증권

	☐ 선물옵션 ☐ 채권 ☐ 주식형펀드 ☐ 채권/혼합형펀드 ☐ 해외펀드 ☐ 투자자문·일임 ☐ 신탁 ☐ 기타 []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 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전혀 없음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5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 ±10% 범위 ☐ ±15% 범위 ☐ ±20% 범위 ☐ ±25% 범위 ☐ ±30% 범위 초과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함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일 자 :

.고객의 성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서명/인
서명/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 (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의당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이자추구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I)>

- 개인투자자용 -

□ 문항별 배점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⑥로 응답한 경우 6점, ⑦로 응답한 경우 7점, ⑧로 응답한 경우 8점, ⑨로 응답한 경우 9점, ⑩로 응답한 경우 10점, ⑪로 응답한 경우 11점, ⑫로 응답한 경우 12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10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1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 1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 1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1점
- 20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1점
- 2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1점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I)>

- 일반법인투자자용 -

□ 문항별 배점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⑥로 응답한 경우 6점, ⑦로 응답한 경우 7점, ⑧로 응답한 경우 8점, ⑨로 응답한 경우 9점, ⑩로 응답한 경우 10점, ⑪로 응답한 경우 11점, ⑫로 응답한 경우 12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10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1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1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 1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 1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4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점, ④로 응답한 경우 1점
- 1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4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점, ④로 응답한 경우 1점,
- 20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2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2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22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3점)하고, 이를 100점 으로 환산

(예) 1번부터 22번까지의 합이 45점인 경우, $45\text{점}/53\text{점} \times 100 = 84.9\text{점}$

□ 투자자유형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유형을 5단계로 분류

.15점이하 : 이자추구형 .15점초과 ~ 30점이하 : 안정형
 .30점초과 ~ 45점이하 : 안정추구형 .45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60점초과 : 적극투자형

- 파악된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분류

구 분			위험 감내도(투자기간)				
			단기 (1년 미만)	단중기 (1년~1.5년)	중기 (1.5년~2년)	중장기 (2년~3년)	장기 (3년 이상)
투 자 자 성 향	(고 위 험)	60점초과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45점초과 ~ 60점이하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30점초과 ~ 45점이하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저 위 험)	15점초과 ~ 30점이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15점이하	이자추구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 전문투자자의 경우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 유형
분 류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이자추구형
SPARX (주식+파생) 유형군	집중투자형	-			
	Active형				

[별지 제2-1호]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생년월일: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투자권유 상품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 투자일임계약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원금손실 가능성(또는 원금소과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작성일자 . . 작성자 성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 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 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 하고 확인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 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 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투자숙려기간 부여(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 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 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 다.

[별지 제4호]

투자일임 계약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 핵 심 사 항 >

- 투자 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은 원금손실 가능성 (또는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증권(레버리지ETF 등)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 사전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보수 일부 환급 및 성과보수 수취,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규모가 계약의 일부해지 등에 의하여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97조 제1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니스토리투자자문(주)로부터 (투자일임 계약 권유문서)를 (제공 받았으며), (투자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설명 듣고) ,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202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5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